

[별표 1의3] <개정 2008.2.22>

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(제168조의10제3항관련)

1. 가축별 기준면적

구 분	사 업	가 축 두 수	축사 및 부대시설		초지 또는 사료포		비 고
			축사 (제곱미터)	부대시설 (제곱미터)	초지 (헥타르)	사료포 (헥타르)	
1. 한우 (육우)	사육사업	1두당	7.5	5	0.5	0.25	말·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 육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.
2. 한우 (육우)	비육사업	1두당	7.5	5	0.2	0.1	
3. 유우	목장사업	1두당	11	7	0.5	0.25	
4. 양	목장사업	10두당	8	3	0.5	0.25	
5. 사슴	목장사업	10두당	66	16	0.5	0.25	
6. 토끼	사육사업	100두당	33	7	0.2	0.1	친칠라를 사 육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.
7. 돼지	양돈사업	5두당	50	13	—	—	개를 사육하 는 경우를 포 함한다.
8. 가금	양계사업	100수당	33	16	—	—	
9. 멧돼지	사육사업	5수당	7	7	—	—	여우를 사육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2. 가축두수